

『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폐지이유

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(대통령령)」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 제1조, 제2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

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
(대통령령)」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
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폐지조례안은
지방공무원 직종개편(2013.12.12 시행)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
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
규정(대통령령)」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
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
하다고 사료됨.